

Korean Tax Update

October 2018, Issue 52

[조세뉴스]

국세청,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전문보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17.(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및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개선방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음.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한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실시 및 성실 공익법인 편법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상시 수집·해소 및 세무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등, 국세청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전문보기]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함. 중앙의 기능 및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등의 추진방안 기본원칙을 세우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9년 15%, '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방안 수립에 착수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전문보기]

정부는 10.24(수)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확정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하고,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턴하는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 및 세제감면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보기]

정부는 10.30(화)에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으로, 금

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예규·판례]

[판례1]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주식을 취득한 후 의결권행사를 채권단에게 위임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 두 44753 판결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점주주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음.

[판례2]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 두 48908 판결

-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부동산을 쟁점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 현물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점진적인 입법과정을 비추어 봤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더해서 원고의 쟁점 현물출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원고는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례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의 계속 요건 충족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 두 42184 판결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1] 무상 취득한 쟁점상표사용권의 자산수증이의 익금산입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조심 2018 서 1182, 2018. 8. 29.

-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 영구·독점적으로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안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쟁점상표사용권을 ①식별 가능성, ②자원에 대한 통제, ③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한국 내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상표사용권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되어 익금산입된 무형자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쟁점상표사용권에 상당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2]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 중 0994, 2018. 8. 29.

- 청구법인은 해외제조법인과 부품매출거래를 통해 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상표권 사용료라는 별도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별개의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부품가격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해외제조법인 간의 상표권 재사용계약서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이나 심리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해외제조법인 간 부품가격 산정 방법 및 상표권 사용료 포함 여부는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로서 청구법인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상표권 재사용계약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3]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설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311, 2018. 8. 29.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의 성격이 있으나 쟁점토지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의 취득을 교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취득가격은 될 수 있으나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거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4] 지방세법 개정(2014.1.1.) 전에 발생한 2012·2013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8 지 0383, 2018. 8. 30.

- 청구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이 2014.1.1. 개정됨에 따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례5]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보증수수료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심 2018 지 0807, 2018. 9. 4.

- 청구법인이 지급한 PF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례6]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893, 2018 9. 6.

- 청구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등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1항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7]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중 0858, 2018. 9. 7.

-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조달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율의 산출방법과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무관청의 쟁점후순위차입금 조달을 포함한 자금재조달계획의 승인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청구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

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재조달계획서상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16.0%)과 쟁점이자율(24.6%)도 서로 다른 점, 2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차입할 수 있는 선순위차입금의 규모보다 실제 차입 규모가 적어 동일한 차입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고율의 쟁점이자율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한 점, 청구법인이 징수할 추정통행료의 규모(불변가액)가 선순위·쟁점후순위차입금보다 커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한 적이 없으며, 선순위차입금과 쟁점후순위차입금의 대주가 각 동일하여 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인 쟁점이자율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례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에 대한 손비한도 판단을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업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7 부 3326, 2018. 9. 12.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5호는 「상법」 제340조의2제2항제1호를 세법에 규정한 것으로, 이 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이미 법인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종업원 1인당 주식매수선택권을 10% 이하로 부여하라는 의미이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중 종업원 1명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부여하는 경우 그만큼 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또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당시의 법령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만'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법」 제340조의2제3항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심판례9]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 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490, 2018. 9. 11.

-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므로 신탁재산의 경우 대법원은 수탁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점, 청구법인이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게 된 시점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점, 「지방세법」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

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해당 조문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10]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심 2018 서 2006, 2018. 9. 17.

-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91,822주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유지되었는데, 동 주식은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금전이 출금된 뒤 다시 수개월 뒤 입금된 금전으로 취득되었는 바,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위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비록 같은 액수라 하더라도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그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들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동일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동 주식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례11]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로 신고시 공제 가능 여부

조심 2018 전 1990, 2018. 9. 20.

- 「상법」상 상사채권의 원칙적인 소멸시효(5년)는 채무자의 '승인', 채권자의 '청구'·'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중단되는 것으로, 비록 쟁점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후 인가된 이 건 회생계획에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회생절차 개시 후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채권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 의지를 표명하여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된 이상,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임이 분명하며,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일부 금액(2%)을 변제받은 사실도 있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이 사건은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를 넘어 쟁점채권의 대손사유 여부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납세자 일방에게만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심판례12]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조심 2018 광 0065, 2018. 9. 20.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인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도 동일하게 표시하여 신고한 점, 주식등변동상황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수집된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례13] 인하한 소주의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조심 2018 부 2501, 2018. 9. 27.

- 청구법인이 쟁점 소주 1병의 출고가격 인하 시 출고가격변동신고서상 주류의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의 임의누락을 통해 출고가를 신고한 후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출고가격을 인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인하한 출고가격은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감안한 가격으로 보이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동종업체의 경쟁제품 출고가격이 1006~1016원으로 형성된 것을 봤을 때 청구법인이 인하한 출고가격은 적절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하한 출고가 격이 아니라 인하 전. 후의 출고가격을 통상가격으로 보아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심판례14]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

조심 2017 서 2222, 2018. 9. 27.

-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이 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양도가액과 관계 없는 취득가액 관련 규정(「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을 들어 합병(분할)을 매개로 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자산(유가증권)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자산(유가증권) 양도가액이 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이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추론에 의한 해석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등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등의 양도손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례15]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시 분할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계산 방법

조심 2017 중 3051, 2018. 10. 8.

-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이 분할법인의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기간은 0.875년(3.5년/4년)에 불과하고, 분할법인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기간은 1.125년(4.5년/4년)이 되어 비교대상이 되는 해당 과세연도(1년)와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쟁점기간 동안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분할일 전일까지 부문별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으로 그 결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과 분할법인 모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기간은 1년(4년/4년)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같아지게 되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예규1] 건설업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2018. 9. 7.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예규2]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89, 2018. 9. 1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과 해당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것은 변경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등을 고려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게 됨. 따라서 당초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재건축사업 역시 합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재건축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제 대상 재건축조합 및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 모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예규3]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28, 2018. 9. 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77조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회원제 골프장을 포함함)"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됨.

[예규4] 해상에서 유조선의 원유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송유관과 연결된 해상설치구조물(SPM)의 취득세 과세 여부

지방세운영과-2214, 2018. 9. 21.

- 해당 SPM은 해상에서 원유 등을 해저 송유관으로 주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해저 송유관과 일체가 되어야만 원유수송을 위한 시설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 점, 해저 송유관과 독립하여서는 기능상 별개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상설치구조물인 SPM은 해저 송유관과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취득비용은 해저 송유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예규5]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2018. 9. 4.

-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며, 합

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함주식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예규6]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활용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2018. 9. 11.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광고콘텐츠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유지관리·운영업무 포함)하고 광고대행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규7]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2018. 10. 8.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과세이연 받은 후 당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에 의해 합병신주로 대체되고, 그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신주를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예규8] 수도권(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수도권(경기도)의 부동산 취득시 증가 여부

지방세운영과-2422, 2018. 10. 15.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특별히 증가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이후의 기간은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전입 이후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증가할 수 없을 것임.

[삼성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BUSINESS Watch,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 질까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S.Manager(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성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8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